

아하! 쟁점 사례풀이

Q.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2. 1. 27.부터 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한 회사 내에 장소적으로 분리된 지사, 지점 등이 있는 경우 사업장을 기준으로 50인 미만이면 법 적용이 제외된다고 볼 수 있나요?

A.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슴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 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21. 1. 2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제정이유, 법제처).

이 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조),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회사 내에 장소적으로 분리된 지사, 지점 등이 있는 경우 사업장 단위로 50인을 기준으로 법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을 대표하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장소적 개념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법의 적용 범위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고 전제한 후, 본사와 생산업무를 담당하는 공장, 학교법인 산하의 대학교와 부속병원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

장으로 보아야 함'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해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고용노동부. 2021. 11.)

한편 노동부는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원칙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어도 하나의 사업이라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함. 이 경우 독립성이 있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분류(대분류)의 상이성,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적용, 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2018. 5월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또한 동일한 대표자가 경영하는 하나의 법인이 관리하는 여러 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 경우가 있으며(2004. 7. 29, 근로기준과-3902), 하나의 법인 내에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본사에서 영업 및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독자적으로 사업운영이 이뤄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근로기준과-2579, 2004. 5. 24)이라는 유권해석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해설서,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하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한 회사 내 본사, 지점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영업 등의 기능을 본사가 총괄한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사, 지점의 상시 근로자수 모두 합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본 '아하! 쟁점 사례풀이'는 사실 관계의 추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1 적용범위(법 제3조)

법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의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함
- 중대산업재해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등(개인사업주를 포함함)**에게 적용됨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

□ 원칙

-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을 대표하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이러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 제3조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음
- 따라서 장소적 개념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법의 적용 범위를 판단하여서는 안됨

- 원칙적으로 본사와 생산업무를 담당하는 공장, 학교법인 산하의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7650판결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예컨대 사무직과 생산직), 직위(예컨대 고위직과 하위직), 업종(예컨대 제조업과 서비스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 공사 시청료 징수원의 담당업무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단일 기업체인 피고 공사라는 하나의 사업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또한 사업의 종류, 영리·비영리 여부를 불문함
- 아울러 사업이 일회적이거나, 사업 기간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법의 적용 대상임(대법원 1994.10.25. 선고 94다21979 판결)